

임원 등 선거규정, 세칙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

임원 등 선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 제28조, 제38조에 의하여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윤리) 선거는 정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선거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 등”이라 함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과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4조 (선거관리)

-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차기총회에 임박하여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시 대표이사가 지명하여 보완한다.

제5조 (선거권)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는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임원 등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6조 (피선거권)

- ① 정관 제27조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임원 등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우리 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은 사퇴 후 당해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장 후보자 등록

제7조 (등록신청)

- ① 임원 등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기간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임원 등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등록신청서에 주주회원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회원증 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본인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또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확인을 지참하여 본인의 임원자격에 관한 규정 3조②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해당란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 피선거권이 없거나 정관 및 회사규정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② 종류가 다른 임원 등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원 등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같은 선거에서 다른 종류의 임원 등 후보자로 다시 등록한 때에는 먼저 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③ 후보자 등록 후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5일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원 후보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2주간이상 공고한 후 총회당일 총회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운동

제10조 (선거운동의 주체)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 운동)

- ① 임원 등의 후보 등록을 한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회사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우송할 수 있다. 단, 소견서 제출 시 이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우송하는 소견서에 증명서 미제출이라고 표기한다.
- ② 위 서신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격과 수량을 제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신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우송보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그 후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고, 그 이의에 대하여는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결정한다. 우송보류 결정된 서신에 대하여 1주일내에 후보자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한다.
- ④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확정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인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장 연설)

- ① 임원 등의 후보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총회장에서 각5분 이내로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발표할 수 있다.
- ②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첨 순위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후보자가 자기의 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연설을 방해하거나 총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총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 (선거운동의 금지) 1인1주제의 회사특성,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 참여 의식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 및 회사 규정에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인 홈페이지 및 휴대폰 문자전송 포함)

제14조 (금지사항)

1. 제10조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원을 두는 행위
2. 제11조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신문, 방송, 잡지 기타 선전매체에 선거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4.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각종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주주의 사무소 또는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6. 주주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7. 후보자의 신분, 경력,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 또는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8. 우리 회사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15조 (위반시 벌칙)

- ① 제14조의 1호 또는 5호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2회 이상 위반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제14조의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를 위반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 후 답례 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주주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선거절차

제17조 (진행순서)

①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제1호 및 7호의 순서는 총회 의장의 주재 하에 진행하고, 나머지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1. 선거 안건의 부의 선언
2. 임원 등의 후보자 소견 발표
3. 투표 및 개표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② 동시에 임원 등을 전부 개선하는 경우 선거 안건을 먼저 부의하고,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 (투표의 종류)

1. 대표이사 투표
2. 이사 투표
3. 감사 투표

제19조 (투표 방법)

- ① 투표는 종류별로 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에 임원 등을 전부 개선하는 경우에는 각종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투표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③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법, 위임에 의하여 수임인이 총회장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는 방법, 총회일 이전에 우리 회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방법과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투표는 선거권자마다 종류에 따라 1인 1표로 하되, 투표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기표란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표인을 사용해야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일 경우 총회에서의 신임투표를 대비하여 찬, 반을 묻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21조 (개표방법)

- ① 개표는 투표가 종료한 때에 개시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투표종료전이라도 투표가 완료된 임원 선거에 대하여는 개표할 수 있다.
-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표 종류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③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제22조 (무효 투표)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5장 당선결정

제23조 (당선결정)

- ① 임원 등의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정관 및 회사규정이 정한 정수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총회에 출석한 주주회원(위임 포함)의 5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임투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분한 다음 각 후보자 별로 실시한다.
- ③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임투표에서 임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4조 (당선 정족수) 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 (당선 선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총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정관에 정한 정원에 미달한 경우
 2.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결정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5분의 1이내에서 정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의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보궐선거)

- ① 임원 등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후임자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5분의 1이내에서 정원이 미달되거나 투표가 시행될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임기가 남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의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당선무효, 이의신청)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한 10일 이내에 정관이나 회사규정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선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선거가 실시된 총회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소송 계류 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결정이 정관 및 회사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의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29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

제30조 (감사의 선출) 우리 회사의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규정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우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등 선거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절차 및 후보등록 신청서 등의 양식 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서)

- ① 입후보자가 임원 등의 후보등록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주주 50인~60인, 이사와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추천인이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추천서 보정을 통보받은 후보자는 5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③ 주주회원이 아닌 사람이 추천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과실로 본다.
- ④ 주주회원 1인이 동일한 종류의 임원 등 후보자에 대하여 복수로 추천을 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추천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임장)

- ① 투표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고자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수임자가 그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투표장소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그 투표권은 무효로 하며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한다.
- ② 위임장을 우편으로 접수시 위임장을 개별봉투에 담고 그 봉투 여러 개를 박스에 담아 우체국 소포 또는 우체국 택배로 회사에 도착시킨 경우 박스에 소인이 있으면 봉투에 개별로 소인이 없어도 그 위임장은 유효로 한다.
- ③ 위임장은 선거일 3일전 17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 ④ 위임장의 위임인, 수임인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위임장의 일련번호와 선거인 명부의 성명이 틀린 경우 무효로 한다.
 2. 법인회원의 위임장 작성시 반드시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법인명만 기재할 경우도 인정한다.)
 3. 법인회원이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위임장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삭선을 하고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 주주) 법인인 주주회원은 추천 또는 투표 기타 위임을 할 경우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등의 후보자 등록) 임원 등의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등 후보

등록 신청서에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회원증 사본, 본인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확인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 신청서 등의 양식) 임원 등 후보신청서(별지1), 추천서(별지2), 위임장(별지3), 후보자 경력(별지4), 투표용지(별지5)등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제7조 (감사의 선출) 우리 회사의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질의, 회신)

- ① 주주회원이나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주회원이 후보자에 대하여 경력 등을 문의할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사항, 회사의 임원 및 공식기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

제9조 (보정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하자있는 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5일이내에 그 보정이 없으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사전투표에 관한 세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전투표에 관하여 투표방법, 투표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주주총회일 이전에 우리 회사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방법을 사전투표라 한다.

제3조 (사전투표)

①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사전결의소에서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전투표는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 투표함을 비치하고, 그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④ 사전투표는 선거일 1일전 17:00까지 투표한 경우만 유효투표로 본다.

⑤ 사전투표도 성원 정족수에 포함한다.

⑥ 사전투표와 위임투표를 중복으로 하였을 경우 사전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투표용지의 교부) 사전투표를 한 주주회원에게는 총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단, 수임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12.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16. 1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세칙은 2021. 9. 15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사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세칙

제1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사무직원을 파견 받거나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회사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3조 : 회사로부터 파견된 사무직원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